

의안번호	2205860
의 퇴 인	소병훈의원
회 답 일	2025.01.09.
추계번호	24C5359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 (미수금의 대지급)	-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<u>본인</u>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음 － (개정) 대지급금 구상 대상자를 현행 “본인과 그 배우자,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”에서 “본인”으로 축소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2조 (미수금의 대지급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미수금의 대지급(안 제22조)

-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의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, 개정안에 따라 대지급금 구상의 대상을 현행 “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,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”에서 “본인”으로 한정할 경우 환수액(상환액)이 감소할 수 있음
 - － 현행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 의료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

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2023년 기준 대지급금에 대한 지급액은 63억 600만원이며, 이 중 현행법에 따른 대상자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14억 1,500만원임

[표 1] 2021~2023년 대지급 구상액(지급액) 및 환수액(상환액)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1	2022	2023
지급액	5,041	11,563	6,306
상환액	872	904	1,415

주: 구상은 지급 건에 대해 전건 구상하고 있으므로 지급액으로 표기함
자료: 보건복지부

- 개정안에 따른 상환 감소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대지급 상환액 중 ‘본인 외’ 대상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추이를 파악하여야 하나,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상환액은 대지급건 전용 가상계좌로 입금되어 별도로 입금자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현시점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
 - 또한, 지급액과 지급액 대비 상환액 비율은 2021년 17.3%, 2022년 7.8%, 2023년 22.4% 등 연도별로 일정한 추이가 관찰되지 않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지급액 및 상환액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